

----- 상법전에 나오는 총 9개의 “추정” 조문 모음 -----

제23조(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)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.

④ 동일한 특별시·광역시·시·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**추정한다**.

제47조(보조적 상행위) 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.

②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**추정한다**.

제131조(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) ① 제128조에 따라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**추정한다**.

제168조의3(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) ①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**추정한다**.

제336조(주식의 양도방법)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.

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**추정한다**.

제356조의2(주식의 전자등록) ①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.

③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**추정하며**, 이러한 전자등록부를 선의로, 그리고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하고 제2항의 등록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.

제397조의2(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) ①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이 경우 이사회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**추정한다**.

제399조(회사에 대한 책임)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·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②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회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.

③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**추정한다**.

제467조의2(이익공여의 금지) ①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.

②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**추정한다**.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있어서 회사가 얻은 이익이 공여한 이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때에도 **또한 같다**.

노트 p.52 맨 위의 여백에 필기할 내용

- * 유치권
 - ┌ 민사유치권 ⇨ [사례문제] 아래의 ㉔㉕에 focus 맞춰서 풀이할 것!
 - └ 일반상사유치권 ⇨ “카센터, 슈퍼마켓 사건”을 떠올리면서 풀이할 것!
 - └ 특별상사유치권
 - ┌ 대리상·위탁매매인 ⇨ “회장 아들차 사건”을 떠올리면서 ”
 - └ 운송인·운송주선인 ⇨ [사례문제] 아래의 ㉔㉕에 focus

노트 p.98 맨 위의 여백에 필기할 내용

- * 회사가 해산하면?
 - ⇨ ┌ 원칙 : 해산등기 ⇨ 청산절차 개시
 - └ 예외 : 합병·분할·분할합병·파산 ⇨ 해산등기 특별등기 ⇨ 청산절차 ×

노트 p.106 하단의 그림을 아래의 문장으로 대체합니다.

- 발기인이 갖는 대표권의 범위 : 개업준비행위(성립후의 회사를 위한 행위)의 포함 여부

㉔㉕ 발기인은 설립중의 회사를 위한 행위(ex : 설립사무소 임대차계약)까지만 할 수 있는가, 아니면 성립후의 회사를 위한 행위(ex : 공장건물 임대차계약)도 할 수 있는가?

㉔㉕ “발기인이 성립후의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한 자동차조립계약은 발기인의 권한 내의 행위가 되고 이에 대하여 성립후의 회사가 책임을 진다.” (=광의설)

노트 p.128 가운데 “제2관 / 제3 명의개서의 효력” 목차 옆에 필기할 내용

- *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의 과정에서의 편의제도
 - ┌ 1. 주권 대신에 주식의 전자등록 -----┐ ⇨ 1, 2, 3 모두
 - └ 2. 종이주명부 대신에 전자주명부 -----┐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!
 - └ 3. 회사 총무과 대신에 명의개서대리인 -----┐

노트 p.135 맨 위의 여백에 필기할 내용

- ┌ “甲 → 乙” : To A회사, 9.1. 확정일자 없는 통지 ┐
- └ “甲 → 丙” : To A회사, 9.20. 확정일자 있는 통지 ┐ ⇨ ☹ : 이런 경우에도
- └ “甲 → 乙” : To A회사, 9.25. 확정일자 있는 통지 ┐ 丙이 乙에게 이긴다!!

노트 p.137 맨 아래의 여백에 필기할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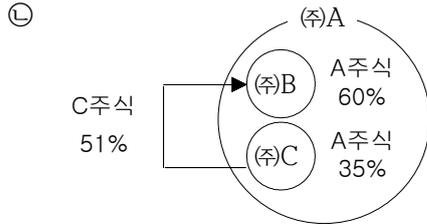
[유의] “이사회결의로 소각” = “이익소각” = “자본금이 감소하지 않는 소각”
⇨ 이런 문구가 보이면 “채권자보호절차 불필요”라는 결론으로 연결돼야 옳음

노트 p.139 하단의 그림과 판례를 아래의 그림으로 대체합니다.

3.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

(1) 요건

㉠ “지배주주” = 어느 회사 발행주식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한 주주
↳ (명의기준×)



지배주주의 보유주식의 수를 판단할 때에는 모회사(B)와 자회사(C)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함 (∴) B는 A의 95/100을 보유한 지배주주!

노트 p.153 上 7줄 “4. 감사선임결의에서의 제한” 보충자료 (2016년 대법원 판례)

정족수의 계산	발행주식총수에 산입 여부	출석의결권수에 산입 여부
의결권 없는 종류주식	법조문 ~ “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” (§371①)	당연한 논리 :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는 더더욱 산입하지 않는다!
자기주식 / 상호보유주식		
특별이해관계인 보유주식		
감사선임시 3% 초과주식	판례 : 발행주식총수에도 산입하지 않는다! (대법 2016)	법조문 ~ “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” (§371②)

노트 p.182 맨 아래의 여백에 필기할 내용

“위법배당” “분식결산”이라는 문구가 보이면? ⇨
 ┌ 제399조, 제401조 책임 모두 발생 가능하고,
 └ 제399조에서 경영판단법칙이 적용 안 되며,
 ↳ 2년 지나도 (부정행위이므로) 책임해제 안됨

노트 p.207 맨 아래의 여백에 필기할 내용

[Q] “준비금의 자본금전입에서 줄어드는 법정준비금과 늘어나는 자본금이 같은 금액일 필요는 없다” (X)

노트 p.242 맨 위의 여백에 필기할 내용

< 어음행위가 제대로 되려면? >

- * 빠짐 없이 기재 <--> if, 필요적기재사항 누락 = 어음 아닌 쓰레기!
- * 능력 있는 자 <--> if, 의사능력, 행위능력 없었으면 = 물적항변사유
- * 하자 없이 의사표시 <--> if, 실수가 있었으면 = 인적항변사유